

2019년 도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제289회 임시회

I·SEOUL·U  
너와 나의 서울

---

# 서울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

---

2019. 9. 4.



서울문화재단

# 정관 변경 보고사항

## □ 보고 근거

- 「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」 제38조(정관의 변경)
  -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□ 개정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라 “근로자이사제”에서 “노동자이사제”로, “근로자이사”에서 “노동자이사”로 개정
- 재단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 제36조에 포함
- 정관의 별표 2 <정원표> 개정

현 행								개 정 (안)							
<별표 2> 정 원 표(제22조 관련)								<별표 2> 정 원 표(제22조 관련)							
총정원	문화행정직						운영지원직	총정원	문화행정직						운영지원직
	계	대표이사	감사실장	1급	2급	3급이하			계	대표이사	감사실장	1급	2급	3급이하	
181	169	1	1	1	3	163	12	202	190	1	1	1	3	184	12

- '19년 증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'20년 개관예정인 청년예술청의 개관준비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규직 21인 정원 증원

## □ 추진 일정(안)

- 2019. 8~9월 중 : 시의회 사전보고
- 2019. 9월 중 : 이사회 의결 예정
- 2019. 10월 초 : 서울시 승인 통보 후 소관 구청에 신고

#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(안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 및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-3904호 “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”에 따라 “근로자이사제”에서 “노동자이사제”로, “근로자이사”에서 “노동자이사”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-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법인세법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관련 정보를 정관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상위 법령 준수를 위해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.
- 서울시 문화시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적정인력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수행 및 안정적인 조직운동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, 제10조(임원의 임기),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개정
  - “근로자이사”를 “노동자이사”로 명칭을 일괄 변경
- 제36조(결산) 개정
  - 재단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
- <별표 2> 정원표 개정
  - 2019년 증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20년 개관예정인 청년예술청의 개관준비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규직 21인을 정원 증원 사항을 별표에 반영함 (문화행정직 21인 증원하여 총 정원 181인 → 202인으로 변경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제안근거 및 관계법령

- 1) 「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」 제22조, 제24조, 제38조, 제41조
- 2) 공기업담당관 3904(2019.03.29.)호 “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”
- 3) 「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4)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시행령 제12조(공익법인등의 범위), 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39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

####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서울시 주무부서와 인력운용 계획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이사회 의결 후, 서울시 및 소관 주무관청 승인 후 시행

## [별첨 1] 제안근거 \_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

**제22조(조직 및 정원)**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6. 28>

**제24조(의결사항)**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1~3. 생략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**제38조(정관의 변경)**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41조(시행규정)**

-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-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[별 첨 2] 공기업담당관-3904호 “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”

「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(조례 제7044호, 2019.3.28.공포·시행)」 제9조에 의거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붙임과 같이 개정(조례명칭 변경, 근로자이사제→노동자이사제, 근로자이사→노동이사)됨을 안내하오니, 기관은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[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개요]

가. 시행일 : 2019. 3.28.

나. 주요골자 : 근로자이사제→노동자이사제, 근로자이사→노동자이사, 근로→노동

다. 개정근거 :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9조 (조례 제7044호)

라. 행정사항 :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

- 정관, 이사회운영규정,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, 선거관리규정 등

### [별첨 3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(공익법인등의 범위)

제12조(공익법인등의 범위)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### [별첨 4]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제1항

제39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부금단체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바목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(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.

가~마. (생략)

- 바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「민법」 상 비영리법인"이라 한다), 비영리외국법인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이 조에서 "사회적협동조합"이라 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

1~2) (생략)

- 3)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<u>근로자이사</u> 1인을 포함한다)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노동자이사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 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근로자이사</u>는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6. 12. 22, 개정 2018. 6. 28&gt;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근로자이사</u>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<u>근로자이사</u>의 임기와 상관없이 <u>근로자 이사</u>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p>	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----- <u>노동자이사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노동자이사</u> ----- ----- <u>노동자이사</u> ----- - <u>노동자이사</u>----- ---</p>
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

8. 근로자이사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

②·③ (생략)

제36조(결산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<별표 2>

정원표

총정원	문화행정직						운영지원직
	계	대표이사	감사실장	1급	2급	3급이하	
181	169	1	1	1	3	163	12

8. 노동자이사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결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

<별표 2>

정원표

총정원	문화행정직						운영지원직
	계	대표이사	감사실장	1급	2급	3급이하	
202	190	1	1	1	3	184	12

#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(안)

제정 2003. 8. 1  
개정 2009. 9. 24  
개정 2010. 1. 25  
개정 2010. 11. 25  
전부개정 2012. 1. 30  
개정 2012. 4. 20  
개정 2013. 7. 19  
개정 2016. 11. 9  
개정 2016. 12. 22  
개정 2018. 6. 28  
개정 2018. 11. 1  
개정 2018. 12. 28  
개정 2019. 00. 00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① 이 법인은 「민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 시켜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칭하며, 영문은 Seoul Foundation for Arts & Culture 약칭 「SFAC」로 표기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의 범위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
2.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
3.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
4.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
5.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<신설 2016. 11. 9>
6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**제5조(수익사업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대행사업)** ① 재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

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7조(공고방법)** 재단이 공고·고시할 사항은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<개정 2018. 06. 28.>

## 제2장 임원 및 직원

**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대표이사 1인
3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노동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) <개정 2016. 12. 22, 2019.00.00.>
4. 감사 2인 이내 <개정 2012. 4. 20>

**제9조(임원의 임면)**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② 시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.

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재정기획관 <개정 2016. 11. 9>
2. 서울특별시문화본부장 <개정 2012. 4. 20, 2016. 11. 9>

④ 대표이사 및 노동자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 <개정 2019.00.00.>

⑤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(임원의 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2, 2018. 06. 28., 2019.00.00.>

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06. 28.>

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,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 <개정 2018. 06. 28.>

⑤ 노동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 <신설 2016. 12. 22> <개정 2019.00.00.>

**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

1. 서울시장의 추천하는 자 2명

2.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3.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
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2. 문화예술계 인사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<신설 2018. 06. 28.>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6.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

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2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)**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06. 28.>

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만약 대표이사까지 부재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2. 4. 20, 2016. 11. 9>

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9조제3항의 당연직이사 중 문화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2. 4. 20, 2016. 11. 9, 2018. 06. 28.>

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 <개정 2012. 4. 20>

⑤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 <개정 2012. 4. 20>

**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<삭제 2018. 06. 28.>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6. 12. 22, 2018. 06. 28.>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6.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016. 12. 22>
7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8. 노동자이사의 경우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<신설 2016. 12. 22> <개정 2019.00.00.>

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**제15조(직원의 임면)**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총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③ 직원의 임면,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6조(임·직원의 복무)**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7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** 재단의 대표이사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대표이사는 시장의,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** ① 재단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

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9>

**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** 재단의 임·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0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**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

**제21조(대리인의 선임)**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## 제3장 조직 및 정원

**제22조(조직 및 정원)**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06. 28.>

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## 제4장 이사회

**제23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4조(의결사항)**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6.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7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8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9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0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

<신설 2016. 11. 9>

11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25조(이사회 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8. 06. 28.>

**제26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. 단, 서면결의를 결정하기 전에 지도·감독 주관부서와 투자·출연기관 재정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.
- ④ 이사장은 제3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이사회 참여제한)**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28조(의사록)**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·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위원회

**제29조(설치)**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
**제30조(운영)**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6장 재산 및 회계

**제31조(재산)**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4. 사업 수익금,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5.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
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위탁사업수입금, 법인사업수입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,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.

**제32조(재산의 관리)**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33조(기금)**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
2. 중앙정부의 지원금
3.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
4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·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.

**제34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.

**제35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

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06. 28.>

**제36조(결산)**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06. 28.>

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06. 28.>

③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,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 <신설 2019.00.00.>

**제37조(손익금의 처리)**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.

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.

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.

## 제7장 보칙

**제38조(정관의 변경)**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7. 19>

**제39조(해산)**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0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.

**제41조(시행규정)**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.

**제3조(사업계획 등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조(경과조치)** 이 정관에 의한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

**부칙** <2009. 9. 24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0. 1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0. 11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2. 1. 30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2. 4. 20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 또는 직제 개·폐 등에 의한 적용)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가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·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, 관련 조항에서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 <2013. 7. 19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6. 11. 9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6. 12. 22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06. 28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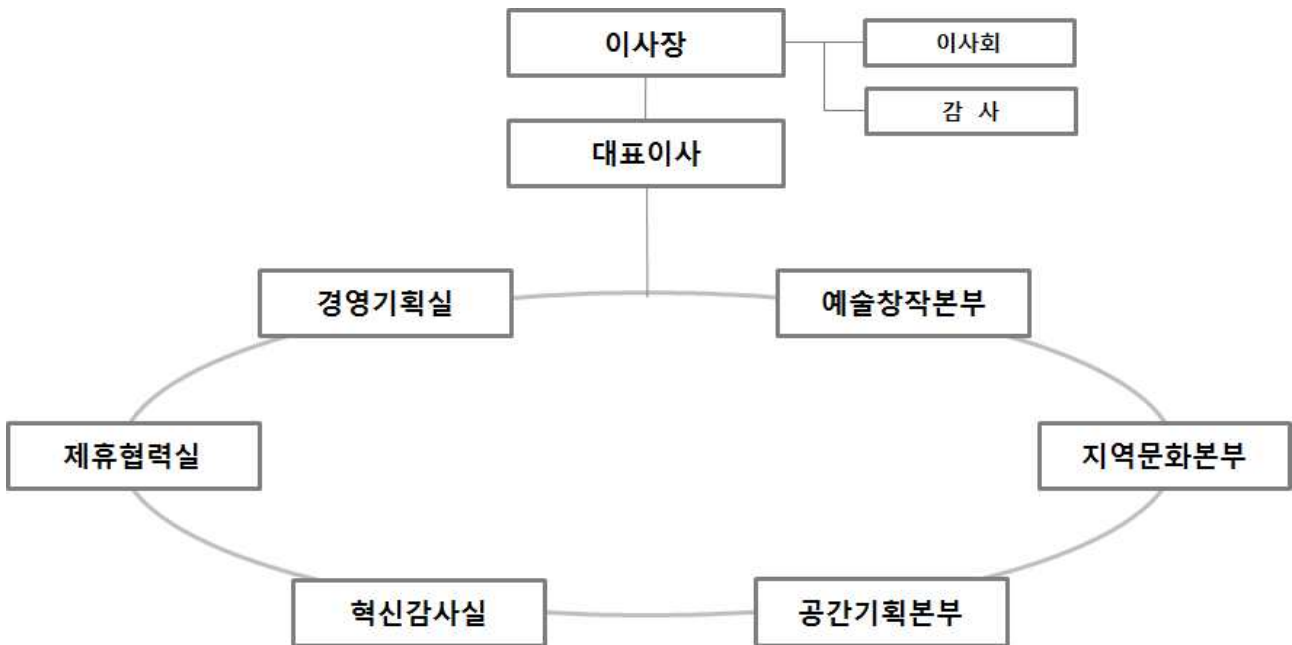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00. 00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 (신설 2018. 06. 28.) (개정 2018. 12. 28.)

기 구 표



<별표 2> (신설 2018. 06. 28.) (개정 2018. 11. 01., 2018. 12. 28., 2019.00.00.)

정 원 표

(단위 : 명)

총정원	문화행정직						운영지원직
	계	대표이사	감사실장	1급	2급	3급이하	
202	<u>190</u>	1	1	1	3	<u>184</u>	12